

特别企画シリーズ

아시아地域工業所有制度

-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許……○
- ……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本으로 한 資料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第7回 ◎

(b) 商標, 商品用 및 營業用 標章의 合計도 있다.

● 필리핀(3) ●

■ 統計(WIPO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

(a) 發明

(i) 特許

年 度	出 願			特 訸 計 與		
	内國人	外國人	計	内國人	外國人	計
1977	127	1149	1276	90	969	1059
1978	129	1271	1400	106	780	886
1979	144	1327	1471	82	775	857
1980	119	1454	1573	31	300	331
1981	91	1514	1605	69	718	787
1982	134	1514	1648	35	525	560

(ii) 實用新案

年 度	出 願			特 許 計 與		
	内國人	外國人	計	内國人	外國人	計
1977	668	5	673	460	6	466
1978	676	18	694	498	6	504
1979	762	24	786	465	3	468
1980	781	15	796	520	14	534
1981	705	19	724	463	7	470
1982	518	21	539	318	3	321

年 度	出 願			登 錄		
	内國人	外國人	計	内國人	外國人	計
1977	1294	1256	3180	818	698	1516
1978	2658	1271	3929	883	560	1443
1979	2479	1501	3908	1322	1051	2373
1980	3244	1373	4617	1142	505	1647
1981	1804	1590	3394	700	829	1529
1982	1362	1599	2961	351	634	985

(c) 意匠

年 度	出 願			特 許 計 與		
	内國人	外國人	計	内國人	外國人	計
1977	366	54	420	165	18	183
1978	295	72	367	201	48	249
1979	298	57	355	168	25	193
1980	415	90	505	276	60	336
1981	274	119	393	209	81	290
1982	202	94	296	158	95	253

■ 特許 情報 ■

1. 所管 政府 部處 또는 機關

(a) 名稱 및 住所

(i) 필리핀 特許廳

商工部

Midland Buendia Building, 403 Gil Puyat Avenue,

Makati, Metro Manila

(ii) Technology Resource Center

Urban II Building, Gil Puyat Avenue, Makati,
Metro Manila

(b) 行政府內의 位罰

(i) 필리핀 特許廳(PPO)은 商工部의 行政指導 및 監督을 받는다.

(ii) 技術資源센터(TRC)는 The Ministry of Human Settlements의 산하단체로서 활동하는 公共團體이다.

(c) 内部構造

(i) 特許廳; 上記 “政府所管部處(c)” 參照
(ii) 技術資源센터; 이 센터를 관장하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은 11名으로 구성되는 The Board of Trustees이다. 事務總長이 센터를 대표하며 大統領이 임명한다. 事務總長과 The Board of Trustees의 委員들 가운데 선출된 4名의 委員으로 구성된 執行委員會가 있다.

(d) 工業所有權과 關職이 있는 政府 部處와의 關係

商工部와 特許廳은 特許 및 商標의 마이크로필름 製作과 데이터베이스計劃의 확장등을 협력하기 위해 TRC와 협정을 맺었다.

特許廳은 TRC의 컴퓨터 施設과 디지털의 연결을 통하여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e) 技術情報와 關聯한 國內 및 外國의 다른 機關과의 關係

情報가 없나. 上記 (d)項 參照

(f) 機 能

(i) 特許廳; 上記 “政府所管部處(d)” 參照

(ii) 技術資源센터는 다음의 일을 한다.

一自信을 가지고, 이미 利用될 수 있는 知識에 몇불여 合理的이고 體系의인 研究 및 開發努力을 함으로써 國內의 社會的・經濟的 發展을 促進 및 強化

一生產 및 서비스分野에서 技術的活動의 効果 및 效率를 促進하고, 그에 関する 國내의 자원 및 기술을 계발

一資源의 効果의in 活用, 그리고 技術 및 情報問題에 대해 體系의in 면에서 신축성 있는 접근

一技術의 問題의 解決을 위한革新的인 선택 및 접근 등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앞으로의 기술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

一技術發展을 감독하고, 社會的, 經濟的 및 物理的計劃과 開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발생된 情報의 축적. 決定權者 및 다른 使用者가 必要한 情報나 原文・統計・圖表로 된 데이터를 조사분석, 확산 및 인정

一情報 技術 및 計劃 研究 能力 등을 통하여 使用者에게 國內・外國 研究機關 등을 연결

一다음의 分野에 관한 영구적 協力 委員會의 계통적 확립. 그 중에서도 食量, 公害제어 및 분배, 健康, 영양, 教育, 通信, 에너지, 환경의 管理, 科學 및 技術 移轉 및 實用化, 주택 및 都市開發, 災害지변, 제어 및 도덕 그리고 計劃管理 및 決定

・센터는 技術情報서비스를 포함하여 國내에서 관찰 있는 分野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文獻 및 데이터베이스

필리핀特許廳은 다음의 (a)~(e)項에 열거한 資料源과 調査手段을 가지고 있다. 技術資源센터(TRC)에 있는 情報는 아래의 (b)(iv)項에 포함된 것과는 별도로 利用할 수 있다.

(a) 特許 書類

(i) 필리핀 特許 書類는 종이로 약 20,000매의 분량이 수집되어 있다(番號順으로).

(ii) 필리핀 特許 書類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약 20,000件의 特許가 수집되어 있다. (1981年까지 최근의 것으로)

(iii) 美國特許 書類는 종이로 최근의 약 20年間의 분량이 수집되어 있다. (番號順으로)

(b) 目錄데이터

(i) 美國分類에 따라 필리핀特許의 카드索引(1年 단위로)

(ii) 저축여부의 調査를 위해 필리핀에서의 出類카드索引(化學分野에 한함)

(iii) 필리핀 特許中 化學分野의 主題別카드철

(iv) 技術研究센터에 約 16,000件의 필리핀特許(1948~1978) 및 1,000,000件以上的 存續期間이 滿了된 美國特許(1949~1960)의 전산화된 데이터 베이스

(v) 1950~1970年 사이의 年間 索引 및 1978年以後의 週間索引(美國特許公報에 게재된)을 포함한 美國分類索引(對照表 포함)

(c) 抄錄 및 專門分野別 抄錄集

特許廳은 “化學抄錄”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d) 特許公報

■ 아시아地域 工業所有權制度 ■

特許廳은 美國特許公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e) 發刊 事業

(i) 필리핀特許廳은 어떤 종류의 定期刊行物도 發刊하고 있지 않다.

(ii) 技術資源 센터(TRC)는 자체활동에 관한 책자 및 채택된 發明에 관한 "Pamayanang Agham"(우수 기술)로 表題된 新聞을 發行하고 있다.

■ 工業所有權과 關聯된 技術移轉

1. 主要 規定

(i) 契約의 管理 및 登錄

外國人회사 또는 外國人 所有의 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결한 모든 技術移轉協定(그중에서도 發明特許나 意匠의 移轉, 讓渡 및 實施權許與 그리고 商標나 技術的 노하우의 實施權許與 등을 포함하여)은 技術移轉委員會의 技術移轉 政策(그 중에서도 關聯技術의 適用이나 필요성 및 그것의 價值에 대한 合當한 代價등과 관련하여)에 비추어서 技術移轉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豫備登錄 및 登錄義務를 이행하고나면 登錄證明書가 發給되어 關聯資料는 證明書登錄簿에 記錄된다. (令 第1520號, 規則 I 1(b)條, 規則 II 2條, 規則 V 1條, 規則 VI 1 및 2條).

만일 認定 및 登錄이 되지 않았다면 實施權許與 契約는 投資部 또는 中央銀行에 접수된 申請書의 증거가 될 수 없다. 登錄이 될 때까지는 第3者에게 어떠한 効力도 갖지 않는다. (法 第165號 33—A(4)條).

申請者는 契約移行에 앞서 인가를 위해 계약사항이나 도면등을 技術移轉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令 第1520號, 規則 IV 5條).

技術移轉委員會는 技術移轉協定의 登錄이 條件에 맞는 가를 판단한다.

認定 및 登錄된 協定에 근거하여 이행되는 計劃의進行을 감독할 목적으로 協定兩側은 年次計劃 및 關聯情報나 報告書를 技術移轉委員會에 提出할義務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技術移轉으로 인해 提供會社에 돌아가는 利益 및 技術습득을 위해 研究 및 開發施設을 設立하는 提供會社의 職員등에 관한 報告書가 포함된다. (令 第1520號, 規則 VII 3條, 規則 VIII 1條)

協定期間의 滿了以前의 어떠한 修正이나 更新 그리고 파기는 技術移轉委員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修正이나 更新은 技術移轉委員會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令 第1520號, 規則 IX 및 X)

(ii) 契約條項

強制條項

• 技術移轉協定에는 그 契約의 解釋은 필리핀 法의支配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규정해야만 하고 또한 5年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契約期間을 명시해야 한다. 輸出主導型企業이나 勞動集約的 產業등과 같이 實質利益이 經濟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技術移轉協定이 產業의 地域 확산을 促進시켜야 된다는가 또는 地域原料의 實質的 使用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등의 義務事項의 比例가 가능하다. (令 第1520號, 規則 V 1(d)(e) 및 2條)

• 實施權許與契約에 있어서 별도의 制限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實施權許與者는 또 다시 第3者에게 實施權을 許與할 수도 있고 자기자신이 그 發明을 利用할 수도 있다(法 第165號 33—B (1)條).

• 獨占排他的인 實施權許與에 있어서는 해당 實施權許與契約에 별도의 规定이 없는 한 實施權許與者는 第3者에게 또다시 實施權을 許與할 수도 없고 자기자신이 그 發明을 利用할 수도 없다(法 第165號 33—B (2)條)

• 實施權許與를 받은 者는 그 特許를 活用함으로써 필리핀 領土내에서 그 特許의 存續期間 동안 그 發明을 利用할 權利를 가진다. 또한 그 特許의 利用 및 放護로 간주되는 特許權者가 부여받은 모든 行爲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이다.

無効 또는 禁止條項

• 制限의인 事業條項은 어떠한 協定에도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다음 條項은 禁止되어 있다.

—協定期間이 종료된 후에 이미 提供된 技術의 使用을 制限하는 條項(필리핀 特許法의 適用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協定의 終了, 과기 또는 無效후에 該當 特許나 기타 다른 工業所有權의 代價를 要求하는 條項

—技術移轉을 받은 者에 의해 창출된 特許받을 수 있는 改善事項은 技術提供者的 명의로 特許받을 것을 규정하거나 技術提供者에게 獨占的으로 讓渡할 것을 要求 또는 無料로 그것을 使用하기 위해 技術提供者에게 通知할 것을 要求하는 등의 條項

—非排他的인 技術移轉을 받은 者가 競爭製品의 販賣 또는 製造에 관하여 다른 技術提供者로부터 特許된 技術 또는 特許되지 않은 技術을 습득하는 것을 制限

하는 條項

一技術移轉을 받은 者에게 그것의 原料, 部品 또는 서비스를 技術提供者 또는 그가 指定한 者로부터 구매할 것을 要求하는 條項(다만 그 販賣價格이 技術提供者가 第3者에게 팔때와 같은 가격으로 國際市場價格을 基礎로 하거나 더 낮은 供給源이 없다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一協定에 근거하여 技術移轉을 받은 者가 製造한 製品의 輸出을 直接 또는 間接으로 制限하는 條項

一技術移轉을 받은 者가 製造한 製品의 生產, 販賣 또는 再販賣價의 範圍나 量을 制限하는 條項

一技術移轉을 받은 者의 技術改善을 위한 研究活動을 制限하는 條項

一協定의 自動的 更新을 規定한 條項

• 特許實施權許與 契約에 包含된 다음의 條項들은 無効로 간주된다.

*共和國法 第165號의 이들 規定들중에 令 第1520號 및 그의 規則의 規定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폐기 또는 수정되었다. (令 第1520號 7條)

一實施權許與者가 指定한 特定한 구입처로부터 차본, 中間製品, 原料 및 다른 技術을 습득하거나 영구적인 고용직원을 채용할義務를 實施權許與를 받은 者에게 부과하는 條項

一實施權許與者가 實施權許與에 따라 製造된 製品의 販賣 또는 再販賣價格을 定한 權利를 갖게 하는 등의 條項

一生產構造 및 生產量에 關한 制限條項

一競爭 技術의 使用을 禁止하는 條項

一全體 또는 部分의 購賣선택을 實施權許與者에게 유리하도록 設定한 條項

一實施權許與된 技術의 使用을 통하여 얻어진 發明이나 改善事項을 實施權許與者에게 移轉하도록 實施權許與를 받은 者에게義務를 부과한 條項

(iii) 로열티

一般規定

그 技術의 協定代價는 그 技術移轉을 받은 者 및 國家經濟에 대한 그 技術의 價值와 關聯하여 合當하여야 한다(令 第1520號 規則 V 1(b)條)

上限金額

• 契約을 위한 로열티의 비율은 技術移轉委員會가 정한다. (令 第1520號, 規則 V 1(b)條)

• 外國人 實施權許與者와 필리핀 實施權許與를 받는 者間に 체결되는 製造를 포함한 모든 實施權許與契約에 지급되는 로열티는 그 契約에 근거하여 製造된 製品의 全體 賣出價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法 第165號 33—A (2) 條)

2. 政府所管部處 또는 機關

(a) 名稱 및 住所

Technology Transfer Board 385 Buendia Avenue Makati, Metro Manila

(b) 行政府內 位置: 商工部 所屬

(c) 內部 構造

技術移轉委員會는 產業長官이나 그의 代理者를 長으로 하여 國家 經濟 및 開發局(NEDA), 中央銀行, 國家 科學 및 技術局(NSTA), 技術資源센터, 投資部 및 特許廳의 代表者들로 構成되었다.

(d) 機能

• 技術移轉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가진다.

一技術移轉 分野에서 政府의 開發的 및 正規的 역할에 總體的 접근을 촉진하는 財產權의 體系를 포함한 政策 公式化

一技術移轉에 關한 政策 및 指導路線의 効果의이고 經濟의이며 有効한 實行을 위한 規則 및 規定의 制定

一技術移轉에 關한 政府의 모든 活動을 조정할 체계를 정립하고 분화된 政府機關間의 계속적이고 뜻깊은 상호보완관계(특히 國家 開發에 技術移轉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등에 關한 決定等에 關해서)를 유지

一技術移轉과 關聯한 政策의 論點, 問題點 및 선택적 접근등에 關한 關聯 政府機關, 私論 및 輿論間에 思想과 情報의 계속적인 교환을 위한 창구역할

一技術移轉委員會의 目的修行을 위해 필요한 다른 機能의 遂行

上記 機能의 遂行으로, 技術移轉委員會는 外國人會社 또는 外國人所有의 會社를 直接 또는 間接으로 체결한 技術移轉協定이 登錄을 해야한다는 등과 같은 規則 및 規定을 정할 수 있으며 그 規則 및 規定의 實行을 위하여 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 職 員

管理職: 委員長, 副委員長/事務總長

評價職: 工學分野 3名, 法律分野 1名, 經濟分野 5名.

〈계속〉